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6. 11. (제회)	

##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6. 11.

#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

제출일자 : 1996. 11.

번호

제출자 : 사천시장

## 1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수방단을 설치하고, 수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수방단원의 구성-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
(안 제3조제1항)
  -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  -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
  -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수방단의 반별 인원과 임무(안 제5조)
  -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    - 주민대피 유도,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, 주민질서 유지 및 통제,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등
  - 복구반 : 30명 내외
    -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,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,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,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  - 구호반 : 10명 내외
    -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, 사망자·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,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,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- 시장은 수방단 소집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 해제  
(안 제6조 제1항)
-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 3년간 기록·보존(안 제6조 제2항)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천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
3.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(단장)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 한다.

제5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는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
가. 주민대표 유도

나.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

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
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
마.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
2. 복구반 : 30명 내외

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· 정비

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

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
라. 재해지구의 정리 · 정돈

3. 구호반 : 10명 내외

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
나. 사망자 · 부상자등 인명 피해자 조치

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

라.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·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사천시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

편 성 현 황			소 집 상 황						비고					
일련 번호	직 책	성 명	주민등록번호	일시( )	일시( )	일시( )	주 소	소집 사유	시간	소집 사유	시간	소집 사유	시간	